

# 2017년도 공연장 안전제도 안내서

- 본 안내서는 2016년 5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연법 상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2017.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목 차

## 1. 개요

1.1 안전제도 개요 .....	1
1.2 안전제도 주요 내용 .....	1

## 2. 안전제도 세부 내용

2.1 공연장 등록 시 .....	2
2.2 재해대처계획 관련 .....	4
2.3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 강화 .....	6
2.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11
2.5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 .....	16
2.6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 .....	20

## 3. 관련 행정제재 .....

23

## 4. 공연장 안전제도 관련 질의응답

4.1 공연장 등록 관련 .....	31
4.2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관련 .....	33
4.3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	36
4.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련 .....	39
4.5 안전관리조직 관련 .....	41
4.6 안전교육 관련 .....	43

[부록 A] 참고서식

[부록 B] 공연장 관련 법규 - 공연장 운영 시기별 정리

[부록 C]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방법

# 1. 개요

## 1.1 안전제도 개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공연장운영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 등을 통틀어 안전제도라 한다.

## 1.2 안전제도 주요 내용

주요내용	법령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li> </ul>	공연법 제9조 공연법 시행령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 매년 신고, 보완 의무 부과</li> <li>· 공연장 외 공연 : 신고 기준 강화(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보완 의무 부과</li> <li>·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li> </ul> </li> </ul>	공연법 제11조제1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연장에서 등록 전 안전검사 실시</li> <li>· 모든 공연장에서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 실시</li> <li>· 모든 공연장에서 9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 실시</li> <li>·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li> </ul> </li> </ul>	공연법 제12조제1항~3항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석 이상 공연장</li> <li>-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공연</li> </ul> </li> <li>·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지자체에 제출</li> </ul> </li> </ul>	공연법 제11조의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석 이상 공연장 및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li> </ul> </li> </ul>	공연법 제11조의3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실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li> </ul> </li> </ul>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 2. 안전제도 세부 내용

### 2.1 공연장 등록 시

#### (1) 주요 내용

##### ■ 변경 사항

-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 \* 50석 미만의 공연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시행령 제8조제5항)이 삭제됨
- 공연장 등록을 하기 위해, '등록 전 안전검사' 의무화
  - \* 기존에는 구동 무대기기가 40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연법이 개정('15.5.19 개정, '15.11.19 시행)되어, 구동 무대기기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공연장이 등록 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종전대로 구동 무대기기가 40개 이상인 경우에만 받으면 됨

##### ■ 기 타

- 공연장 등록 전,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함

#### (2) 관련 법령

구 분	조 항	조 문
공연법	제12조 제1항	<p>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li> <li>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li> </ol>
시행령	제8조제2항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설계검토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li> <li>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li> </ol>

	제8조제5항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도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삭제)
시행규칙	제6조제1항	<p>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설치내역서</li> <li>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li> <li>3. 삭제 &lt;2002.9.11.&gt;</li> <li>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5. 삭제 &lt;2002.9.11.&gt;</li> <li>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li> <li>나.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li> </ul> </li> </ol>
시행규칙	제6조제2항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 (3) 적용일

■ [공연법] 부칙 <법률 제13298호>

·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공연장 객석 수가 50석 미만인 공연장(객석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등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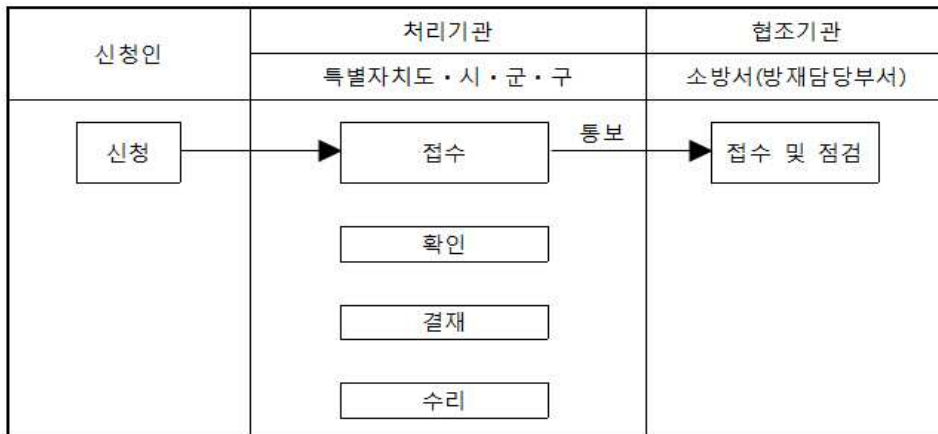
## 2.2 재해대처계획 관련

### (1) 주요 내용

-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구분과 규모에 따른 의무 대상은 아래 표 참조)

구분	규모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공연장	500석 미만	의무 사항 아님	의무 사항 아님	공연자 안전교육만 해당
	500석 이상	의무	의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공연장 외 공연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	의무 사항 아님	의무 사항 아님	의무 사항 아님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	의무	의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중)

## (2) 관련 법령

### [공연법 제11조]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시행일

■ [공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643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3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 강화

### (1) 주요 내용

#### ① 안전진단 구분

##### ■ 안전진단 구분 정리

구분	대상	진단시기	내용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설계검토	구동무대기계·기구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공연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외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대상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토결과를 자체 이행하여야 함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	공연장 등록 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공연장운영자는 보고서 2부를 공연장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정기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	공연장 등록 후 3년마다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공연장운영자는 보고서 2부를 공연장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정밀 안전진단	공연장운영자	정밀안전진단 시기 참조*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를 포함한다.)	공연장운영자는 보고서 2부를 공연장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자체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	매년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

\*정밀안전진단 시기

- ①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공연장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 ③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 ■ 무대시설 규모(구동무대기계·기구 수)에 따른 구분

구동무대기계·기구 수	안전진단 구분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 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0~40	×	○	○	○	○
40이상	○	○	○	○	○

## ②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 ■ 등록 전 안전진단 종류 및 시기

구 분	대 상	진 단 시 기	결과 보고서 처리
설계검토	구동무대기계·기구 40개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기관 → 공연장운영자</li> <li>·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이행하여야 함</li> </ul>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공연장 등록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기관 → 공연장운영자 → 관할 지자체</li> <li>· 등록 전 안전검사 실시 후,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 2부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li> </ul>

### ■ 등록 후 안전진단 종류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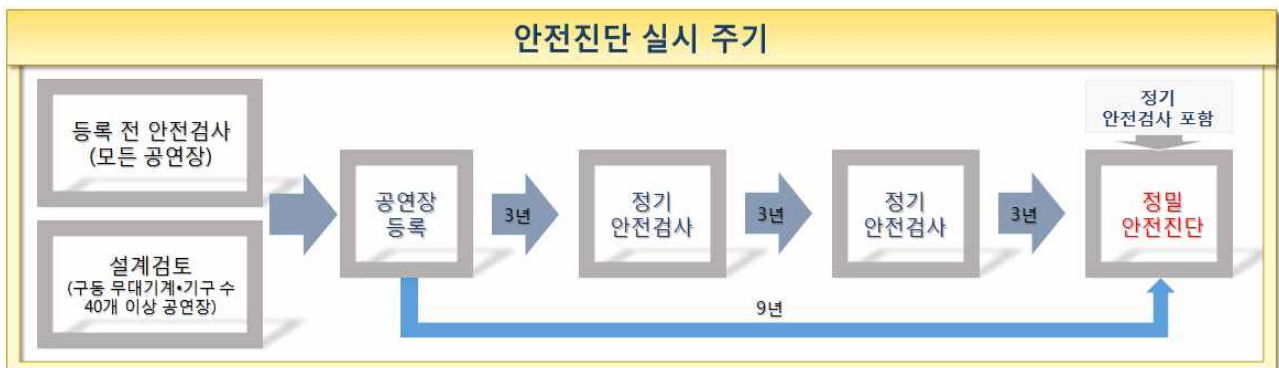
구 분	대 상	진 단 시 기	결과 보고서 처리
정기 안전검사	공연장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기관 → 공연장운영자* → 관할 지자체</li> <li>·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 2부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li> </ul>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li> <li>·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li> <li>·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기관 → 공연장운영자 → 관할 지자체</li> <li>·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 2부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li> </ul>
자체 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실시</li> <li>·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서식 1)에 따라 주간, 월간, 반기별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li> </ul>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주기 (구동무대기계·기구 수 20개 미만인 공연장)

주기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b>최초 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5월 19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li> <li>·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가 되는 해에 실시</li> <li>·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겹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5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공연장은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li>· 2009년 5월 19일 이후에 등록한 공연장은 등록한 날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li> </ul>
<b>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 뒤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li> </ul>	-
<b>공연장 등록일로부터 6년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6년 뒤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li> </ul>	-
<b>공연장 등록일로부터 9년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를 포함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li> <li>·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li> </ul>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주기 (구동무대기계·기구 수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

주기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b>법 개정 후 최초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5년 주기 → 3년 주기로 변경</li> <li>· 공연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li> <li>* (예시) 2011.3.10 등록 공연장 : 2017.3.10.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li> <li>· 적용 유예기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5.19. 이전에 등록한 공연장 중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공연장은 2018.5.19.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li>· 2009년 5월 19일 이후에 등록한 공연장은 등록한 날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li> <li>· 등록한 날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li> </ul>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주기 (40개 이상인 공연장)

주기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법 개정 후	· 공연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	· 2009년 5월 19일 이전에 등록한 공연장은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실시해야 함 · 2009년 5월 19일 이후에 등록한 공연장은 등록한 날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 · 등록된 날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2) 관련 법령

구 분	조 항	조 문
공연법	제12조제1항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제12조제2항	공연장운영자는 <b>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b> 받아야 한다.
	제12조제3항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b>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9년)이 경과한 경우</b> 2. <b>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9년)이 경과한 경우</b> 3. <b>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제10조제3항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정기 안전검사 : <u>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u> 2. 정밀안전진단 : <u>법제12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u>
	<b>제10조제4항</b>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u>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u> 하여야 한다.

###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

#### ■ [공연법] 부칙 <법률 제13298호>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5년 11월 19일

##### ·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 :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미만인 공연장

⇒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 2018년 5월 19일 이내

#### ■ [공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643호>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제4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2.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무대시설의 공연장운영자

## 2.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1)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공연장운영비	<p>연간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비목에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건비</li> <li>2. 경상사무비</li> <li>3. 관리운영비</li> <li>4. 시설유지·보수비</li> <li>5. 사업비(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대관 등 기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단,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제외한다.)</li> </ol>
공연비용	<p>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기획, 제작,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비목에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건비</li> <li>2. 경상사무비</li> <li>3. 시설 및 장비 대여비</li> <li>4. 시설 유지·보수비</li> <li>5. 공연제작비</li> <li>6. 공연사업비(공연자 출연료, 이동경비, 식대비 등)</li> </ol>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p>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간(체육관, 강당 등)이나 야외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p>
사용내역서	<p>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의 안전관리비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이다.</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li> <li>·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 공연이 행해지는 장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li> </ul>

## (2) 주요 내용

### A 공연장의 경우

#### ■ 적용대상 및 비율 : 500석 이상의 공연장

- 다수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500석 이상에 한함)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각각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사용방법

- 안전관리비는 서류상 편성된 예산 항목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시] 예산명이 '안전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연장 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등 실질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위해 비용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안전관리비'에 해당한다.

#### ■ 제출방법 및 시기 (안전관리비 계상)

- 차기년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대처계획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2017년 재해대처계획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장을 처음 등록하는 공연장운영자(500석 이상의 경우)는 공연장 등록과 함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해 연도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 등록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시] 2016년 11월 1일 등록 예정 공연장(500석 이상의 경우)  
공연장 등록 시 2016년도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관련 사항 포함)  
제출 및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재해대처계획 제출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매년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B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 적용대상 및 비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비용 중 일정금액을 아래의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21% 이상
-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공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전체 공연기간의 공연비용 총합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공연이더라도 장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공연 각각에 대한 공연비용의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사용방법

- 안전관리비는 서류상 편성된 예산 항목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시] 예산명이 '안전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연장 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등 실질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위해 비용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안전관리비'에 해당한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연준비/실시 기간 동안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이뤄지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시행(2016년 5월 19일) 이 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관련 법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3. 보호장비의 구입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6. 안전 관련 보험
  7.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매년 2월 말일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4) 시행일

■ [공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170호>

·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5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

### (1)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예시.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2) 주요 내용

#### 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 A 공연장의 경우

- 공연시설 중 공연장(무대공간과 객석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위험 상황 시 공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2년마다 4시간 이상)하여야 하므로,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장 직원 중에서 겸직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안전관련 자격증, 학위 등) 없이 임명 가능하다.

##### B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공연 기획 및 제작 단계, 그리고 준비 및 실시 단계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책임/권한이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2년마다 4시간 이상)하여야 하므로,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기획/제작사 직원 중에서 겸직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안전관련 자격증, 학위 등) 없이 임명 가능하다.

## ②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A 공연장의 경우

- 공연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2년 8시간 이상)하여야 하므로, 안전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장 직원 중에서 겸직으로 선임 가능하며,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안전관련 자격증, 학위 등) 없이 임명 가능하다.

### B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공연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2년 8시간 이상)하여야 하므로, 안전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단체 직원 중에서 겸직으로 선임 가능하며,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안전관련 자격증, 학위 등) 없이 임명 가능하다.

### (3) 관련 법령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1. 공연장운영자

- 가. 객석 수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4) 시행일

- [공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170호>
-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공연장 운영자의 경우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 2.6 안전교육 실시 의무

### (1)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공연자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 공연법 제2조제3호

### (2) 주요 내용

#### ① 공연자 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켜 매년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연자 안전교육은 **공연 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연 참여 인원과 공연장소가 변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공연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공연의 경우에는 최초 1회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연이 연간 단위로 지속된다면 공연자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된 공연장 또는 공연단체는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 공연장 또는 공연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연자 안전교육 영상콘텐츠 배포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중이며, 2017년 3월 중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니,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등은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주기]

1.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2.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연장운영자등은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나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연간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마다 당해 연도의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일정을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③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 공연장운영자등은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주기]**

- 1.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2.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연장운영자등은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나 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연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마다 당해 연도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일정을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3) 관련 법조문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교육의 내용

### 1. 공연자

-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총괄책임자

-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담당자

- 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라.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바.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시행일

- [공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170호>
-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 관련 행정제재

#### 3.1 공연장 등록 관련

##### (1) 관련 내용

- 등록 공연장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연장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조항	조문
공연법	제33조제1항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b>4. 제9조를 위반한 자</b></p>
	제43조제2항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b></p>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행정조치사항 및 과태료 기준

- 행정조치 사항

위반행위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일	7일	15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3일	7일

-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3.2 재해대처계획 관련

### (1) 관련 내용

-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대상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2) 행정조치사항 및 과태료 기준

#### ■ 행정조치 사항

위반행위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일	7일	15일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일	15일	1개월

위반행위	공연자에 대한 공연 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3) 관련 법조문

구분	조항	조문
공연법	제33조제1항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b>5.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b></p>
	제43조제1항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b>재해대책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b></p> <p>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책계획에 따라 <b>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b></p>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3.3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 (1) 관련 내용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개수 혹은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연장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자체 안전검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연장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2) 행정조치사항 및 과태료 기준

##### ■ 행정조치 사항

위반행위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7일	15일	1개월

##### ■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 관련 법조문

구 분	조 항	조 문
공연법	제33조제1항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p>
	제43조제2항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 ②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3.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련

#### (1) 관련 내용

-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 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에 알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3) 관련 법조문

구 분	조 항	조 문
공연법	제4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b>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b>

#### [공연법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공연장 안전제도 관련 질의응답

### 4.1 공연장 등록 관련

질문 1	객석 수가 20석 가량인 공연장도 공연법상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객석 수 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90일 미만, 계속해서 30일 미만으로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3	공연장 등록을 위해 공연법이 정하는 무대시설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포함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입니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아울러, 모든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도 받아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 제1항).

### 4.2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관련

질문 1	강당 등 공연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2천명의 관람객이 체육대회 중 공연을 관람하게 될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체육대회 등 다른 행사 중에 공연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이라면,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오디션처럼 지원자가 모이는 장소에서 오디션을 진행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p>관람객이 없는 오디션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관람객이 있는 오디션은 오디션이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됩니다.</p> <p>오디션이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의 운영자가 이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했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그러나 등록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오디션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p>

질문 3	재해대처계획서 신고 의무는 500석 이상인 공연장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답변	<p>공연장 객석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장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p>

질문 4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에서 재해대처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p>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자(주최측)의 주재로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p>

질문 5	재해대처계획서는 공연마다 하나씩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p>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자가 매년 12월 말일까지 차기년도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p> <p>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서를 신고하였으므로, 공연 주최 측에서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p> <p>등록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한해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다만, 주최자, 공연명, 공연단 규모, 공연장소의 변동이 없으면 동일한 공연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공연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신고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p>

질문 6	재해대처계획서는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p>현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에서 &lt;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gt;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 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li> <li>2. 비상 시에 하여야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li> <li>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li> <li>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 (공연장 외 공연만 해당)</li> </ol> <p>참고로 &lt;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gt;는 법적 서식이 아니므로, 공연장이나 공연 환경에 따라 주요 안전사항을 추가되어야 할 경우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p>

### 4.3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문 1	무대기계·기구 수 20개 이상이며, 2003년 1월 6일 등록된 공연장의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p>공연장에 대한 법정 안전진단은 크게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공연법 제1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등록된 모든 공연장</li> <li>- 등록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li> </ul> </li> <li>■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공연법 제12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안전진단 대상 : 등록된 모든 공연장</li> <li>- 등록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li> <li>-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li> </ul> </li> </ul> </div> <p>■ 정기 안전검사</p> <p>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3년 1월 6일 등록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20개 이상의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 시기(2015년 11월 19일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27 1160 1353 131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검사 주기</th> <th style="width: 40%;">검사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2017년 12월 6일 ~ 2018년 2월 6일 사이</td> <td>정기 안전검사</td> </tr> <tr> <td>2020년 12월 6일 ~ 2021년 2월 6일 사이</td> <td>정기 안전검사</td> </tr> <tr> <td>2023년 12월 6일 ~ 2024년 2월 6일 사이</td> <td>정기 안전검사</td> </tr> </tbody> </table> <p>■ 정밀안전진단</p> <p>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등록된 지 9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매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p> <p>2003년 1월 6일 등록했으면서 2015년 11월 1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이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p> <p>2003년 1월 6일 등록했으면서 2015년 11월 1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p> <p>참고로,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기 안전검사 시기인 "2017년 12월 6일 ~ 2018년 2월 6일"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7년 12월 6일 ~ 2018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0년 12월 6일 ~ 2021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3년 12월 6일 ~ 2024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7년 12월 6일 ~ 2018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0년 12월 6일 ~ 2021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3년 12월 6일 ~ 2024년 2월 6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질문 2	2006년 8월에 등록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의 공연장의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p>■ 정기 안전검사  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6년 8월 등록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의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 시기(2015년 11월 19일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28 640 1353 759"> <thead> <tr> <th data-bbox="328 640 948 685">검사 주기</th> <th data-bbox="948 640 1353 685">검사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8 685 948 723">2018년 7월 ~ 2018년 9월 사이</td> <td data-bbox="948 685 1353 723">정기 안전검사</td> </tr> <tr> <td data-bbox="328 723 948 759">2021년 7월 ~ 2021년 9월 사이</td> <td data-bbox="948 723 1353 759">정기 안전검사</td> </tr> </tbody> </table> <p>■ 정밀안전진단  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등록된 지 9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매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6년 8월 등록했으면서 2015년 11월 1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이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6년 8월 등록했으면서 2015년 11월 1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p> <p>참고로,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2018년 5월 19일 이전에 받으시더라도, 이와 별도로 정기 안전검사를 2018년 7월~9월 사이에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향후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여, 정기 안전검사 일정에 맞추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8년 7월 ~ 2018년 9월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1년 7월 ~ 2021년 9월 사이	정기 안전검사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8년 7월 ~ 2018년 9월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1년 7월 ~ 2021년 9월 사이	정기 안전검사						

질문 3	2014년 4월 1일에 등록한 공연장의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p>■ 정기 안전검사 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4년 4월 1일 등록한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검사 주기</th> <th>검사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2017년 3월 1일 ~ 2017년 5월 1일 사이</td> <td>정기 안전검사</td> </tr> <tr> <td>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1일 사이</td> <td>정기 안전검사</td> </tr> </tbody> </table> <p>다만, 해당 공연장의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2018년 5월 19일 이전까지 정기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되며, 차기 정기 안전검사는 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1일 사이입니다.</p> <p>■ 정밀안전진단 개정된 공연법(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에 상관 없이 등록된 지 9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매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4년 4월 1일 등록한 공연장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2023년 3월 1일 ~ 2023년 5월 1일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p>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7년 3월 1일 ~ 2017년 5월 1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1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검사 주기	검사 종류						
2017년 3월 1일 ~ 2017년 5월 1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2020년 3월 1일 ~ 2020년 5월 1일 사이	정기 안전검사						

질문 4	같은 연도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p>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 안전검사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면 됩니다.</p> <p>다만, 같은 연도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이 해당되더라도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정기 안전검사 시기(등록일 전후 31일 이내)와 다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p>

질문 5	자체 안전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며 검사 결과는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p>자체 안전검사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간, 월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서식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4항)</p>

질문 6	정기 안전검사 주기일과 같은 연도지만, 법에서 정한 주기 이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58(2016.4.8.)]

질문 7	기존에 5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던 공연장은 개정 공연법에 따라서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 받지 않고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2015년 5월 개정된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연법 부칙<제13298호>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는 ‘공연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구동무대기계/기구수 20개 미만 공연장)’에 적용되므로 구 공연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온 공연장은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4.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련

질문 1	관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안 및 안내요원이 통상 공연 시에는 배치되는데 이 분들을 안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p>관객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 및 안내요원은 관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내요원이 관객 안전 업무 외 타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전체 인건비가 아닌 안전 업무에 관한 인건비만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업무 비율이 대략 70%라면 인건비 중 70%만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p>

질문 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고시가 정해져 있는지? 아님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소방시설, 안전용품, 안전설비 등 안전을 위한 설비가 해당됩니다.

질문 3	안전관리비에 안전보험 관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
답변	보험의 경우, 보험의 처리 대상이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 보험의 경우 공연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인지,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전자의 경우 안전관련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	당해 연도 예산 항목 중 안전관리비로 잡힌 비목이 없을 경우,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p>안전관리비는 예산에서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시면 해당 예산은 공연법 상 안전관리비로 간주됩니다.</p> <p>(예) 안전관리비 비목이 없더라도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 유지 및 보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질문 5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p>공연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 공연은 안전관리비를 의무비율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의무비율 이하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lt;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관리비 의무 비율(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li> <li>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li> <li>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li> </ol> </li> </ol>

질문 6	소규모 공연장은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습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에서는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석 수가 500석 미만인 공연장은 법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p>

## 4.5 안전관리조직 관련

질문 1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에서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다만,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안전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공연장 운영 및 공연 진행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함을 권장합니다.</p>

질문 2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장이나 공연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p>현행 공연법에서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연장 또는 공연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다만,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장 또는 공연의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직위로, 현장에 상주하여 비상상황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질문 3	안전총괄책임자는 꼭 1명만 지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안전총괄책임자를 정과 부를 나눠서 지정해도 됩니까?
답변	<p>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과 결정을 해야 하므로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p> <p>안전총괄책임자의 부가 되는 역할은 안전관리담당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질문 4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에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하청업체 직원 중에서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p>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의 전반적인 안전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가급적 공연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청업체 직원도 공연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대처계획서를 접수 받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가 안전 총괄 관리·감독 역할에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에 관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한다면, 하청업체 직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p>

질문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에서 시설이나 장소 담당자는 안전관리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시설이나 장소 담당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직 의무는 없습니다.</p> <p>다만,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이 열리는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 바, 시설이나 장소 담당자는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 주최 측과 협의하여 함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p>

질문 6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에서는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석 미만의 공연장은 법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p>

## 4.6 안전교육 관련

질문 1	공연장에서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두라고 했는데, 양식이 있나요? 보관일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에서는 안전교육 결과에 대한 기록양식과 보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그러나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작성·제출할 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가 3년 주기임을 고려할 때,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안전교육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록양식은 없으며,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합니다.</p> <p>참고로 안전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작성매뉴얼(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이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stagesafety.co.kr">www.stagesafety.co.kr</a>)에 있으니 안전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정리 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p>

질문 2	공연자 안전교육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 배우들과 스템을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1시간 동안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	<p>현행 공연법 상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입니다.(공연법 제11조의4)</p> <p>다만,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온라인동영상, 교재 등을 활용하여 개별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p> <p>아울러,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므로 반드시 공연 직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을 준비하는 준비기간 중 교육이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p> <p>참고로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중이며, 2017년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니,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질문 3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매 공연마다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p>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혹은 기관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p> <p>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 후 매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p>

질문 4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 공연 시작 전 7일 이내에 재해대처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p>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혹은 기관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9조의4)</p> <p>따라서, 재해대처계획 신고 당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향후 안전교육 이수 계획 혹은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아울러, 재해대처계획서를 접수 받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안전교육이 이수되지 않아 안전 총괄 관리·감독 역할에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완 혹은 교육 이수 촉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p>

질문 5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은 10년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공연장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없는데, 강의를 어떻게 시켜야 합니까?
답변	<p>현행 공연법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에 대해, 안전교육 강사 자격 요건만을 두고 있으며,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p> <p>이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시거나,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시는 등 공연장 또는 단체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p> <p>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교육일정은 매년 1월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 요건(공연법시행령 제9조의4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li> <li>-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질문 6	재해대처계획에 공연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합니까?
답변	<p>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p> <p>따라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등록 공연장이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연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여야 합니다.</p>

## [부록 A] 참고 서식

- 본 서식은 공연장운영자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본 서식은 공연장과 공연 운영 및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조직 구성 이력

공연장 또는 공연 명 <sup>1)</sup>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공연시설 또는 공연단체 명 <sup>2)</sup>		객석 수 또는 예상 관람객 수 <sup>3)</sup>	
주소			

###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이력

성 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 .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이력

성 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 . .		
	. . .		
	. . .		
	. . .		

- 1)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명을 기입하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의 경우 공연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의 경우, 공연장 명은 “해오름극장”으로 기입
- 2)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이 포함된 공연시설 명을 기입하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단체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의 경우, 공연시설명은 “국립극장”으로 기입
- 3) 공연장의 경우 객석 수를 기입하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은 예상 관람객 수를 기입하도록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안전교육 실시 이력/계획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장 또는 공연 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이력			지정 연월일	. . .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 . .
				. . .
				. .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지정 연월일	. . .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는 자체 보관하도록 하며, 요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계획함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부록 B] 공연장 관련 법규 - 공연장 운영 시기별 정리**

- 본 문서는 공연장 운영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를 정리하여 공연장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으며, 본 도서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공연장 등록 시

## (1) 등록 대상 및 절차 (공연법 관련)

### ■ 공연장 등록 대상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공연장 등록 절차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 공연법 시행령 제8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 공연장 등록 제도

구 분	세 부 규 정	관련법령
등록대상	-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법제2조 법제9조 영제1조의2 영제8조 규칙제6 별지제10호서식
등록반려	- 무대시설(조명, 음향시설 포함). 방음시설(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제외)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계검토의 경우 무대시설이 40개 이상인 공연장에만 해당) -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영제8조 규칙제5조

## (2) 등록 전 준비 사항 (공연법 관련)

### ■ 공연장 등록증 첨부서류

- ① 시설설치내역서 (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④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 가. 신규등록

- 설계검토 결과 보고서(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인 공연장에 해당)
-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등록하려는 모든 공연장에 해당)

#### 나. 변경등록

-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공사 사이버사업소(<https://cyber.kesco.or.kr>) : 사용전점검 신청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기준에 알맞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의거하여 모든 공연장에 해당함

### ■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 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정보 (16년 6월 30일 기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031-500-0313	031-500-036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02-860-7080	02-861-2788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1212	02-3281-4060	02-3281-4058
(주)코스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717호)	032-432-2114	032-438-2114
한국검정(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6-15	02-2188-0075	02-554-3884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2-8	02-2635-4732	02-2635-4726

■ 재해예방조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예방계획 신고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연도에 해당하는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은 해당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① 객석 수 500석 미만 공연장의 경우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객석 수 500석 이상 공연장의 경우

: 공연장 운영자는 아래와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

나.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다.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이력 및 계획)

■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②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요령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공연장안전지원센터, `15.12 참고)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연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이라 함

- 건축허가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7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적용 대상 공연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공연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cm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 의 높이가 1.2 m 이내일 것

다. 개구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특정소방대상물로서의 공연장

① 방염 부분

[소방시설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방염성능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구분	내용
방염	<p>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sup>2</sup> 이상인 공연장에서 아래 물품은 방염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li> <li>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li> <li>다. 전시용 합판, 무대용 합판</li> <li>라.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li> <li>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li> </ul> </li> <li>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li> <li>나. 합판이나 목재</li> <li>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li> <li>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li> </ul> </li> </ol>

② 소화설비 부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구분	내용
소화기구	연면적 33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천 m <sup>2</sup>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m <sup>2</sup>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p>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공연장</li> <li>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m<sup>2</sup> 이상인 공연장</li> <li>2번 항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m<sup>2</sup> 이상인 공연장</li> </ol> <p>※ 단,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p>
간이스프링클러설비	<p>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sup>2</sup> 이상의 공연장</p> <p>※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p>

③ 경보설비 부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구분	내용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m <sup>2</sup>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 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와 단독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천5백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 단,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공연장 ※ 단,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천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 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모든 공연장
가스누설경보기	연면적 500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④ 피난설비 부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

구분	내용
피난기구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난유도등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통로유도등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유도표지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객석유도등	연면적이 300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m <sup>2</sup> 이상 2. 1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 단,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4) 건축법 상 공연장 시설 기준

##### ■ 건축법에서의 공연장 구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되지 않은 공연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 ■ 시설 기준

구분	내용
거실의 반자높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반자(층고)의 높이는 4미터 (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 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계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관련]
직통계단의 설치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물의 대피공간으로 사용되는 층을 제외하는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제외)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중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중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구분	내용
<p>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p>	<p>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관련]</p>
<p>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p>	<p>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석으로부터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p> <p>공연장 관람석으로부터 바깥쪽으로는 출구로 사용되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p> <p>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의 출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li> <li>-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li> <li>-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 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련]</p>
<p>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설치</p>	<p>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위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의 거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직통계단 기준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함</li> <li>-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공연장에서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li> <li>-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할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li> <li>-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p>
<p>계단의 설치 기준</p>	<p>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계단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li> <li>-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li> <li>-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관련]</p>

구분	내용
<p>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p>	<p>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li> <li>-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li> <li>-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관련]</p>
<p>경사로의 설치 기준</p>	<p>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li> <li>-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li> <li>-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관련]</p>
<p>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유효너비</p>	<p>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관련]</p>
<p>복도의 설치 기준</p>	<p>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의 너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5 미터 이상</li> <li>-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8 미터 이상</li> <li>-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4 미터 이상</li> </ul> <p>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관람석의 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li> <li>-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관련]</p>
<p>지하층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층에 있는 공연장은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li> <li>-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li> <li>-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관련]</p>

구분	내용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p>지하층에 위치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상탈출구를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li> <li>-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li> <li>-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li> <li>-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li> <li>-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li> <li>-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li> </ul>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관련]</p>
방화구획의 설치	<p>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단,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은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p> <p>[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관련]</p>
건축물의 내화구조	<p>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변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함</p> <p>※ 내화구조와 방염은 다른 의미이다.</p> <p>[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관련]</p>
배연설비	<p>6층 이상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아래와 같은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함</li> <li>-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p>[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p>

## 2. 공연장 변경 등록 시

### (1) 공연장 변경 등록

#### ■ 공연장 변경 등록 사유

- 1) 설치자 변경 및 운영자 변경
- 2) 공연장의 명칭 변경
- 3) 공연장 소재지 변경
- 4) 공연장 시설 설치 변경

→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서상 기재사항인 설치자 또는 운영자 등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은 정정사유로 변경 등록 사유가 아님

#### ■ 공연장 변경 등록 대상 및 제출 서류

##### 1) 공연장운영자 변경

※ 현행 공연법 및 하위 법령은 공연장운영자의 변경을 변경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① 등록증 1부

###### ②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양수인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2) 공연장의 명칭 변경

###### ① 등록증 1부

###### ② 공연장의 명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공연장 소재지 변경

- ①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③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공연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4) 공연장 시설 설치 변경

①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②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③ 공연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 재해대처계획 변경 신고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였을 경우, 공연장 변경 등록된 내용에 따라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2) 구조 변경 공사 시 적용 받는 전기사업법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기준에 알맞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의거하여 모든 공연장에 해당함

### (3) 구조 변경 공사 시 적용 받는 소방시설법

#### ■ 임시소방시설

구분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참조]</li> <li>2.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li> <li>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li> </ol>
임시소방시설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화기</li> </ul> </li> </ol>



<p>종류와 설치기준 등</p>	<p>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p> <p>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p> <p>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p> <p>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p> <p>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p> <p>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p> <p>1) 연면적 3천㎡ 이상</p> <p>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p> <p>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p> <p>1) 연면적 400㎡ 이상</p> <p>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p> <p>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p> <p>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p> <p>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p> <p>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p> <p>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p>
-------------------	--

### 3. 공연장 운영 시

#### (1) 무대시설 안전진단

##### ■ 정기 안전검사

등록된 모든 공연장은 공연장으로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정밀안전진단

등록된 모든 공연장은 공연장으로 등록한 날 혹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정보 (2016년 6월 30일 기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031-500-0313	031-500-036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02-860-7080	02-861-2788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1212	02-3281-4060	02-3281-4058
(주)코스텍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717호)	032-432-2114	032-438-2114
한국검정(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6-15	02-2188-0075	02-554-3884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2-8	02-2635-4732	02-2635-4726

##### ■ 자체 안전검사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검사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자체 안전검사 기준 및 기록 서식은 부록 참조

## (2)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 공연장 시설관리 및 점검

구분	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li> <li>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li>3.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다.</li> </ol> <p><b>[자체점검 방법은 부록 참조]</b></p>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p>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li> <li>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li> <li>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li>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li> </ol>
소방안전관리	<p>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4의 업무는 공공기관에만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li> <li>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li> <li>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소방훈련 및 교육</li> <li>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li> <li>6. 화기 취급의 감독</li> </ol>

## (3) 전기사업법 상 공연장

###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

용량이 **2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공연장**에서는 설치된 전기설비가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65조)
  - 정기검사대상 : 공연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 검사 시기 : 2년마다 전후 2개월
  - 검사 대상 : 전기수용설비, 자가용 송전·배전 선로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공연장**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공연장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 정기점검

- 가. A·B·C 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
  -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
  -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등급의 구분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등급 지정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5)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연장

■ 적용 대상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공중이용시설로 규정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오염허용기준이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1.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 $\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연장

■ 적용 대상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감염병 예방

공연장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아래 횟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① 4월부터 9월까지 : 1회 이상/2개월
- ② 10월부터 3월까지 : 1회 이상/3개월

→ 관할 보건소 문의

■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 1회 : 50만원
- 2회 이상 : 100만원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상 공연장**

■ 적용 대상 : 모든 공연장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 공연장 등록 시 적용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함

■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

■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공연장**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인 공연장 운영자는 장애인등을 위하여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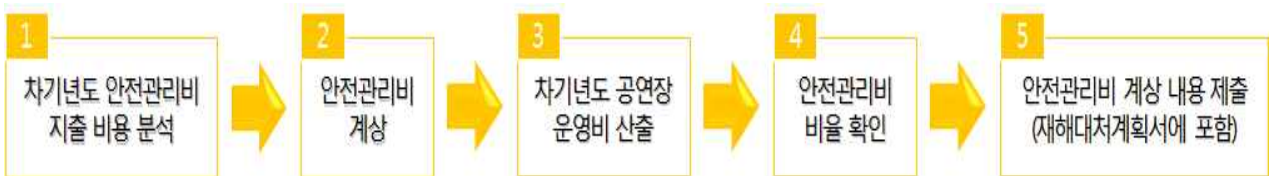
## [부록 C]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방법

- 본 내용은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1.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비

## (1) 계상 및 제출

### ■ 안전관리비 계상 절차



### ① 차기년도 안전관리비 지출 비용 분석

안전관리비 계상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연장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연장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무대시설 자체 안전점검
- 무대시설 안전진단 협의 및 일정 관리
-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관리
- 안전 회의(정기 회의, 공연 전 회의, 스태프 회의 등)
-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취약 시설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전기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실시 및 일정 관리
-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점검

위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예상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차기년도에 안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의 용도로 안전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비 산출

공연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운영비의 1 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공연장운영비란, 연간 공연장(무대시설, 객석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비목	관련
인건비	공연장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
	공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 담당자
	시설관리자
경상사무비	인쇄 및 복사비
	회의비
	통신요금
관리운영비	업무운영비
	임대료
	외주 용역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보수비	무대시설 유지·보수
	객석시설 유지·보수
	각종 점검에 따른 비용
사업비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대관 등 기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비용 제외)

500석 이상의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공연장이 공연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 여러 공연장이 하나의 공연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립극장의 경우 국립극장이라는 공연시설에 해오름극장, 별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등의 공연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관리비는 등록된 개별 공연장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공연장운영비 또한 개별 공연장 마다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연장 운영 예산은 공연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되기에 개별 공연장에 대한 운영비 산출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공연장의 면적, 업무 범위 등에 따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연장운영비 산출 예시

① 인건비

공연시설 내 500석 이상의 등록된 공연장 A, B가 있다고 보자. 홍길동 감독님은 A공연장에서 근무를 하지만 B 공연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그럼 A공연장에 투입되는 홍길동 감독님의 인건비는 업무 비율에 따라 70%의 업무를 A공연장에서 수행한다면, A공연장의 인건비는 홍길동 감독님 연봉의 70%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공연장에서의 홍길동 감독님의 인건비는 나머지 30%를 적용할 수 있다.

공연시설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김길동 대리님은 A, B 공연장의 운영을 위한 사무 업무와 공연장 운영 외적인 업무도 하고 있다고 보자, 업무 비율이 공연장 운영에 대한 업무가 50%고 나머지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면, 김길동 대리님의 공연장운영비 중 인건비는 운영에 관한 업무 분량에 따라 A공연장은 30%, B공연장은 20%로 산출할 수 있다.

② 경상사무비,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인건비의 경우 업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지만, 기타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시설 및 면적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시설유지·보수비는 공연장의 시설 규모에 따라 그리고, 경상사무비, 관리운영비 등은 공연장의 면적 규모에 따라 예산을 나눌 수 있다.

④ 안전관리비 비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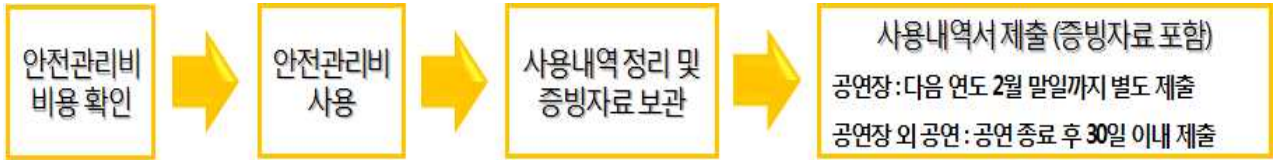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계획된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이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⑤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제출

안전관리비 계상은 각 공연장마다 예산 비목 및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과 안전관리비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 (2) 사용내역서 제출

### ■ 사용내역서 제출 절차



### ■ 안전관리비 사용 가이드

전년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비용을 해당연도에는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관객 안전을 위한 안내 요원 수당 및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의 인건비 중 안전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겸직일 경우, 본연의 업무와 안전관련 업무간의 업무 투입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 ②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피난기구 등이 있으며,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공연장의 무대시설, 전기시설, 건축시설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 ③ 보호장비의 구입

: 작업용 마스크, 장갑 등 소모성 보호장비를 포함하여, 개인보호장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 제11조의4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공연장 종사자의 안전지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장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 훈련을 위해 소비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소방·전기·건축 등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안전 관련 보험

: 보험의 경우, 보험의 처리 대상이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은 안전 관련 보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안전사고 사후 대책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용 내역 정리 및 증빙자료 보관

안전관리비를 사용했다면 안전관리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연말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용내역서 제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본 안내서의 부록 A의 참고서식을 갑지로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비

### (1) 계상 및 제출

#### ■ 안전관리비 계상 절차



#### ■ 공연비용 산출 가이드

##### ① 공연 진행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지출 비용 분석

안전관리비 계상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연 준비, 셋업, 진행 단계에서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자체 안전점검
-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관리
- 안전 회의(공연 전 회의, 스태프 회의, 관객안전관리 회의 등)
- 안전교육 및 훈련(관객 안내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 등)
- 안전취약 시설, 장소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점검

위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예상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차기년도에 안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의 용도로 안전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공연 비용 산출

공연비용은 공연을 기획·제작·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인건비	기획·제작·진행에 따른 공연 조직원의 인건비
경상사무비	공연 전반에 걸친 행정적 업무에 대한 경상 사무비 (인쇄비, 통신비, 사무비용 등)
시설 및 장비 대여비	트러스, 의자, 조명, 음향 등 외부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때 소비되는 비용
시설유지·보수비	자체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공연제작비	공연 및 무대를 제작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공연사업비	공연자 출연료, 이동경비, 식대비 등에 소비되는 비용

공연비용이 정해지면 아래의 공연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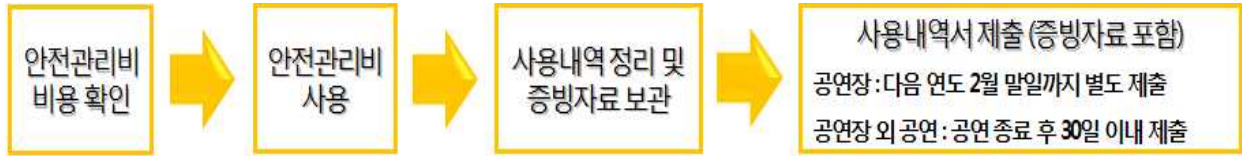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21% 이상

⑤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제출

안전관리비 계상은 각 공연마다 예산 비목 및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과 안전관리비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 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 (2) 사용내역서 제출

### ■ 사용내역서 제출 절차



### ■ 안전관리비 사용 가이드

공연 전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계상 비용에 따라 아래의 사용 목적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 ①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관객 안전을 위한 안내 및 보안 요원 수당 및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의 인건비 중 안전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겸직일 경우, 본연의 업무와 안전관련 업무간의 업무 투입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 ②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는 관객 안전을 위한 배리어,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라고 판단되는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보호장비의 구입

: 작업용 마스크, 장갑 등 소모성 보호장비를 포함하여, 개인보호장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 제11조의4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공연 종사자의 안전지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 훈련을 위해 소비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장치 점검 및 트러스의 구조적 점검에 소비되는 비용과 그 밖의 소방·전기·건축 등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⑥ 안전 관련 보험

: 보험의 경우, 보험의 처리 대상이 안전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 비용은 안전관

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은 안전 관련 보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안전사고 사후 대책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용 내역 정리 및 증빙자료 보관

안전관리비를 사용했다면 안전관리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 사용내역서 제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본 안내서의 부록 A의 참고서식을 갑지로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정리하여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연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